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호외 2023. 4. 18.(화)

www.jeonbuk.go.kr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211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14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발행 전라북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4월 18일

전라북도 규칙 제3211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표(제61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제 정 관
		직	렬 별								
총 계				5,471	1,450	112	3,551		336		22
정 무 직 계				3	1						2
	정무직	소계		3	1						2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 정 직 계				14	6	8					
	1급상당	소계		1	1						
		관리관·별정(정무부지사)		1	1						
	4급상당	소계		7	1	6					
		비서실장		1	1						
		행정·별정		4		4					
		행정·기술·별정		2		2					
	5급상당	소계		2	2						
		비서관		1	1						
		국제관계대사		1	1						
	6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7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일 반 직 계				1,774	1,251	104	96	303		20	
	2-3급	소계		3	2	1					
	2~3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소계		10	9		1				
	3	부이사관		10	9		1				
	3-4급	소계		2	2						
	3~4	행정·기술		2	2						
	4급	소계		76	56	4	5	10		1	
	4	행정		29	15	4	4	5		1	
	4	행정·기술		43	41			2			
	4	기술·농업연구		1			1				
	4	기술·수의연구		1					1		
	4	기술·녹지연구		1					1		
	4	기술·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5급	소계		304	246	14	10	30		4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직 렬 별								
	5	행정	133	100	10	9		10		4
	5	공업	1	1						
	5	농업	5	4				1		
	5	녹지	3	2				1		
	5	해양수산	5	5						
	5	시설	18	16				2		
	5	운전	1	1						
	5	행정·사회복지	12	12						
	5	행정·숙기	1		1					
	5	행정·공업	11	10				1		
	5	행정·농업	16	13	1			2		
	5	행정·사서·시설	1	1						
	5	행정·녹지	2	2						
	5	행정·해양수산	1	1						
	5	행정·보건	1	1						
	5	행정·환경	4	4						
	5	행정·시설	28	27	1					
	5	행정·방재안전	1	1						
	5	행정·방송통신	3	3						
	5	행정·학예연구	1	1						
	5	공업·환경	1	1						
	5	공업·시설	2	1				1		
	5	농업·수의	5	5						
	5	녹지·녹지연구	1					1		
	5	수의·수의연구	6	2				4		
	5	해양수산·시설	1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5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5	보건·간호	5	5						
	5	보건·약무	1	1						
	5	환경·시설	3	3						
	5	행정·공업·환경	3	3						
	5	행정·공업·시설	3	2			1			
	5	행정·농업·수의	0							
	5	행정·농업·시설	1	1						
	5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5	행정·보건·공업	1	1						
	5	행정·환경·녹지	1	1						
	5	행정·환경·사회복지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직 렬 별								
	5	농업·환경·수의	1	1						
	5	수의·수의연구·농업연구	2					2		
	5	농업·농업연구·수의·수의연구	1					1		
	5	행정·수의·보건·식품위생	1	1						
	5	행정·환경·시설	4	4						
	5	행정·시설·사회복지	1	1						
	5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5	보건·식품위생·의무	1	1						
	5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5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603	474	40	12		70		7
	6	행정	233	184	28	7		9		5
	6	세무	7	7						
	6	전산	15	13	1	1				
	6	사회복지	8	7				1		
	6	사서	2	1	1					
	6	속기	2		2					
	6	공업	22	20	1	1				
	6	농업	23	20				3		
	6	녹지	13	9				4		
	6	수의	11	3				8		
	6	해양수산	25	16				9		
	6	보건	4	4						
	6	환경	10	10						
	6	시설	70	62	1			7		
	6	방송통신	5	5						
	6	운전	7	4	1			2		
	6	행정·세무	5	5						
	6	행정·전산	10	9	1					
	6	행정·사회복지	7	6						1
	6	행정·사서	1	1						
	6	행정·공업	4	3				1		
	6	행정·농업	10	8	1			1		
	6	행정·녹지	2	1				1		
	6	행정·보건	1	1						
	6	행정·환경	7	7						
	6	행정·시설	18	17	1					
	6	행정·방재안전	1	1						
	6	행정·방송통신	2	2						
	6	행정·학예연구	1					1		
	6	전산·방송통신	3	2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의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직 렬 별								
6	전산·시설		1	1						
6	사회복지·보건		1	1						
6	사회복지·간호		1	1						
6	공업·환경		1	1						
6	공업·운전		1					1		
6	농업·시설		1					1		
6	농업·수의		8	8						
6	농업·농업연구		2			1		1		
6	녹지·시설		1	1						
6	녹지·녹지연구		2						2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6	수의·농업연구		1						1	
6	수의·수의연구		16	2					14	
6	보건·식품위생		8	8						
6	보건·의료기술		2	2						
6	보건·간호		4	3		1				
6	보건·약무		1	1						
6	보건·환경		2	2						
6	보건·공업		1	1						
6	환경·시설		1	1						
6	시설·방재안전		1	1						
6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6	행정·공업·시설		3	3						
6	행정·시설·녹지		1	1						
6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6	사회복지·보건·환경		1	1						
6	행정·보건·간호·약무		1	1						
6	통신운영		1	1						
6	기계운영		2			1		1		
6	사무운영		5	4	1					
7급	소계		566	372	31	35		122		6
7	행정		193	149	20	11		7		6
7	세무		7	7						
7	전산		12	9		2		1		
7	사회복지		9	9						
7	사서		1	1						
7	속기		3		3					
7	공업		24	13		3		8		
7	농업		19	13		2		4		
7	녹지		12	7				5		
7	수의		51	3				48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의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7	해양수산	18	9			9		
	7	보건	2	2					
	7	환경	14	11		3			
	7	시설	57	47	1	2	7		
	7	방재안전	1	1					
	7	방송통신	7	6			1		
	7	위생	1			1			
	7	시설관리	1			1			
	7	운전	15	6	2	1	6		
	7	행정·세무	2	2					
	7	행정·전산	9	9					
	7	행정·사회복지	6	6					
	7	행정·사서	2	2					
	7	행정·공업	7	6	1				
	7	행정·농업	3	1	2				
	7	행정·녹지	1				1		
	7	행정·보건	2	1		1			
	7	행정·환경	4	3		1			
	7	행정·시설	7	6			1		
	7	행정·방재안전	3	3					
	7	행정·방송통신	1	1					
	7	행정·농촌지도	1			1			
	7	전산·방송통신	3	3					
	7	전산·농업연구	1			1			
	7	공업·녹지	2			1	1		
	7	공업·시설	2	2					
	7	농업·시설	1				1		
	7	농업·수의	5	4				1	
	7	행정·학예연구	1					1	
	7	농업·농업연구	1					1	
	7	녹지·녹지연구	1					1	
	7	수의·수의연구	8					8	
	7	해양수산·환경	2	2					
	7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7	보건·식품위생	8	7		1			
	7	보건·약무	1	1					
	7	보건·간호	8	6		1	1		
	7	시설·방송통신	1	1					
	7	시설·방재안전	2	2					
	7	시설·사회복지	1	1					
	7	방재안전·방송통신	1	1					

직종별	기관별		합계	본청	사무회차	직기	속관	사업소	합행기	제정관
	직급별	직렬별								
7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7		행정·보건·간호	1	1						
7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7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7		행정·시설·공업·농지	2					2		
7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7		농업·시설·공업	1					1		
7		농업·보건·식품위생	1	1						
7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7		전화상담운영	1	1						
7		전기운영	0							
7		기계운영	1				1			
7		열관리운영	2				1	1		
7		사육운영	1					1		
7		사무운영	3	1				2		
8급 소계			140	56	9	22		51		2
8		행정	40	24	4		5	5		2
8		전산	1					1		
8		사회복지	2	2						
8		사서	1				1			
8		속기	3			3				
8		공업	17	2	1		7	7		
8		농업	6	3				3		
8		농지	6	1				5		
8		해양수산	8	1				7		
8		보건	2	1			1			
8		환경	1				1			
8		시설	13	6				7		
8		운전	12	2	1		5	4		
8		행정·전산	3	2				1		
8		행정·사회복지	2	2						
8		행정·농업	1	1						
8		행정·시설	1					1		
8		행정·보건	1	1						
8		전산·방송통신	1	1						
8		공업·환경	1	1						
8		공업·운전	2					2		
8		시설·방재안전	1	1						
8		시설·공업	1					1		
8		보건·식품위생	2	2						
8		보건·간호	1	1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의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직 렬 별								
	8	전기운영	2			1		1		
	8	전화상담운영	0							
	8	기계운영	5	1				4		
	8	농림운영	2					2		
	8	사무운영	2	1		1				
	9급	소계	61	29	5	11		16		
	9	행정	3	2	1					
	9	공업	2		1	1				
	9	농업	2					2		
	9	시설	1	1						
	9	해양수산	1					1		
	9	방송통신	1	1						
	9	운전	7			1		6		
	9	행정·시설	2					2		
	9	위생·조리	1	1						
	9	통신운영	2		1	1				
	9	기계운영	3			2		1		
	9	사육운영	1					1		
	9	사무운영	35	24	2	6		3		
		전문경력관 소계	9	5				4		
		가군 소계	1	1						
	가	비상계획관	1	1						
	가	경제분석전문위원								
		나군 소계	8	4				4		
	나	홍보연구원	1	1						
	나	화생방관리원	1	1						
	나	발간실장	1	1						
	나	보존문서관리원	1	1						
	나	농기계교육교관	3					3		
	나	농업인교육전문위원	1					1		
		연구 직 계	198	5		160		33		
		연구관 소계	38	2		32		4		
	관	학예연구	4	2				2		
	관	농업연구	16			16				
	관	녹지연구	1					1		
	관	수의연구	1					1		
	관	보건연구	3			3				
	관	환경연구	3			3				
	관	보건연구·환경연구	10			10				
		연구사 소계	160	3		128		29		
	사	학예연구	5	2				3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사 무 회 처 직 기	속 관	사 업 소	합 행 기	의 제 정 관
직 종 별	직 급 별	직 렬 별							
	사	기록연구	1	1					
	사	농업연구	62			59	3		
	사	녹지연구	8				8		
	사	수의연구	8				8		
	사	해양수산연구	7				7		
	사	보건연구	27			27			
	사	환경연구	34			34			
	사	보건연구·환경연구	8			8			
지 도 직 계			26			26			
	지도관	소계	7			7			
	관	농촌지도	7			7			
	지도사	소계	19			19			
	사	농촌지도	19			19			
소 방 직 계			3,456	187		3,269			
	소방직	소계	3,456	187		3,269			
		소방정	18	5		13			
		소방령	59	20		39			
		소방령·공업5							
		소방령·방송통신	1	1					
		소방경·공업6	3	3					
		소방경	183	26		157			
		소방위	289	38		251			
		소방장	436	45		391			
		소방교	753	34		719			
		소방사	1,714	15		1,69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표(제61조 관련)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표(제61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사무처	회계	직기	수련	사업소	합계	본청	의사무처	회계	직기	수련	사업소	합계	본청	의사무처	회계	직기	수련	사업소			
5급	소계			303	245	14	10	30	4	304	246	14	10	30	4	304	246	14	10	30	4	304	246	14	10	30	4
5급	행정			132	99	10	9	10	4	133	100	10	9	10	4	133	100	10	9	10	4	133	100	10	9	10	4
6급	소계			604	475	40	12	70	7	603	474	40	12	70	7	603	474	40	12	70	7	603	474	40	12	70	7
6급	행정			234	185	28	7	9	5	233	184	28	7	9	5	233	184	28	7	9	5	233	184	28	7	9	5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14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특별자치도 추진단 신설, 하반기 소방서 개칭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구

- 1) 본 청 : 3실·9국·1본부 63관·과·단 → 3실·1단·9국·1본부 66관·과·단
- 2) 의 회 : 3담당관 9전문위원 → 4담당관 9전문위원
- 3) 직 속 : 3원 13서 → 3원 15서
- 4) 사업소 : 11사업소(변동없음)
- 5) 합의제행정기관 : 1국 2과 (변동없음)

나. 정 원

- 1)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변동 내역(안 제66조)

가) 정원의 총수 : 5,471명 → 5,502명 (증 31명)

나)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5,471명	5,502명	31명	
집행기관의 정원	1,881명	1,901명	20명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3,456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112명	123명	11명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명	22명	-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7)

가) 정무직 총계	: 3명 → 3명(변동없음)
나) 별정직 총계	: 14명 → 14명(변동없음)
· 1급 상당	: 1명 → 1명(변동없음)
· 4급 상당	: 7명 → 7명(변동없음)
· 5급 상당 이하	: 6명 → 6명(변동없음)
다) 일반직공무원 총계	: 1,774명 → 1,804명(증 30명)
· 2급·3급	: 3명 → 3명(변동없음)
· 3급	: 10명 → 11명(증 1명)
· 3급·4급	: 2명 → 2명(변동없음)
· 4급	: 76명 → 80명(증 4명)
· 5급 이하 소계	: 1,674명 → 1,699명(증 25명)
· 전문경력관 소계	: 9명 → 9명(변동없음)
라) 연구직 총계	: 198명 → 199명(증 1명)
· 연구관	: 38명 → 38명(변동없음)
· 연구사	: 160명 → 161명(증 1명)
마) 지도직 총계	: 26명 → 26명(변동없음)
· 지도관	: 7명 → 7명(변동없음)
· 지도사	: 19명 → 19명(변동없음)
바) 소방공무원 총계	: 3,456명 → 3,456명(변동없음)
· 소방정 총계	: 18명 → 20명(증 2명)
· 소방령 이하	: 3,438 → 3,436명(감 2명)

다. 주요 변경내용

- 1) 한시기구 설치(안 제5조, 제8조의2, 부칙 제2조)
 - 가) 특별자치도 추진단 신설
 -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설정
- 2) 사무 이관·변경(안 제6조, 제7조)
 - 가) 기업유치지원실 사무 이관 : 유치기업지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 기업유치추진단)
 - 나) 기획조정실 사무 변경 : 정책관리 → 정책개발

- 3) 소방서 기구 설치(별표 2)
 - 가) 무주·임실소방서 개청
 - 나)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4) 자율기구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3조)
 - 가) 새만금해양수산물국(2023. 9. 1. ~ 2025. 8. 31.)

3. 정원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소요액(추정) : 27.5억원

(단위: 천원)

직종별	직급	기준호봉	인원	1인당인건비(년)	소요액(년)	비고
계			31		2,748,477	
일반직	3급	연봉제	1	128,800	128,800	
	4급	연봉제	4	113,854	455,416	
	5급	연봉제	16	95,742	1,531,872	
	6급	17호봉	4	73,219	292,876	
	7급	7호봉	4	53,653	214,612	
	8급	4호봉	1	44,177	44,177	
연구직	연구사	26호봉	1	80,724	80,724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첨부
-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 라. 입법예고 : 2023. 4. 18. ~ 2023. 4. 24.

5.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4.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전화 : 063-280-4238, FAX : 063-280-21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4238)

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업유치지원실·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새만금해양수산업국·소방본부”를 “기업유치지원실·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특별자치도 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새만금해양수산업국·소방본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업유치·외자유치·새만금투자유치·산단조성관리”를 “기업유치·외자유치·새만금투자유치·산단조성관리·유치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기업현장지원·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유치기업지원”을 “기업현장지원·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책관리·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를 “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별자치도 추진단)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기획조정·입법활동·홍보협력·사회협력에 관한 사항
- 2. 특례총괄·자치권 강화 특례·전환경제 특례·지역개발 특례에 관한 사항
- 3. 자치입법·행정정비·평가·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 중 “미래산업기획·과학기술·ICT산업기반·디지털융합”을 “미래산업기획·과학기술·이차전지반도체·ICT산업기반·디지털융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탄소정책·탄소소재산업·바이오헬스산업·바이오융합산업”을 “탄소정책·탄소소재산업·방위산업·바이오헬스산업·바이오융합산업”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운영·관리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471명”을 “5,5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81명”을 “1,90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12명”을 “123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제8조의2의 특별자치도 추진단 기구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자율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관련)

소방서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	전주시 완산구 일원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11	전주시 덕진구 일원
군산소방서	군산시 변영로 308	군산시 일원
익산소방서	익산시 무왕로 1338	익산시 일원
정읍소방서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5	정읍시 일원
남원소방서	남원시 요천로 1965	남원시 일원
김제소방서	김제시 벽성로 278	김제시 일원
완주소방서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8	완주군 일원
진안소방서	진안군 진안읍 쇠장계로 9	진안군 일원
무주소방서	무주군 무주읍 당산강변로 126	무주군 일원
장수소방서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136	장수군 일원
임실소방서	임실군 임실읍 강천로 33	임실군 일원
순창소방서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24	순창군 일원
고창소방서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4	고창군 일원
부안소방서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86	부안군 일원

[별표 7]

전라북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68조 관련)

직 급 별	기 관 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5,502			-		
정무직 계		3			-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별정직 계		14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일반직 계		1,804			-		
1급		-					-
2급·3급		3	2	1			
3급		11	10		1		-
3급·4급		2	2				
4급		80	59	5	5	10	1
5급 이하 소계		1,699			-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직 계		199			-		
연구관		38	2		32	4	
연구사		161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7			7		
지도사		19			-		
소방직 계		3,456			-		
소방정		20	5		15		
소방령 이하 계		3,436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업유치지원실·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새만금해양수산국·소방본부</u>를 둔다.</p> <p>②·③ (생략)</p> <p>제6조(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기업유치·외자유치·새만금투자유치·산단조성관리</u>에 관한 사항</p> <p>2. <u>기업현장지원·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유치기업지원</u>에 관한 사항</p> <p>3. ~ 5. (생략)</p> <p>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략)</p> <p>2. <u>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u>에 관한 사항</p> <p>3. ~ 7. (생략)</p> <p><신 설></p>	<p>제5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 ----- <u>기업유치지원실·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특별자치도 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새만금해양수산국·소방본부</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업유치지원실) ----- -----.</p> <p>1. <u>기업유치·외자유치·새만금투자유치·산단조성관리·유치기업지원</u>-----</p> <p>2. <u>기업현장지원·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획조정실)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u>-----</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특별자치도 추진단)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기획조정·입법활동·홍보협력·사회협력</u>에 관한 사항</p> <p>2. <u>특례총관·자체세원 발굴·새만금·농생명</u>에 관한 사항</p> <p>3. <u>자치입법·행정정비·평가·역량강화</u>에 관한 사항</p>

제15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미래산업기획·과학기술·ICT산업기반·디지털융합에 관한 사항
- 2.·3. (생략)
- 4. 탄소정책·탄소소재산업·바이오헬스산업·바이오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제53조(소관사무)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 4. (생략)

<신설>

- 5. (생략)

제66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471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881명
- 2. (생략)
- 3. 의회사무처의 정원: 112명
- 4. (생략)

제15조(미래산업국) -----
-----.

- 1. 미래산업기획·과학기술·이차전지반도체·ICT산업기반·디지털융합-----
- 2.·3. (현행과 같음)
- 4. 탄소정책·탄소소재산업·방위산업·바이오헬스산업·바이오융합산업-----

제53조(소관사무)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운영·관리

-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6조(정원의 총수) -----
-- 5,502명-----
-----.

- 1. -----
----- 1,901명
- 2. (현행과 같음)
- 3. ----- 123명
- 4.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증원(일반직 +31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최근 3년간(2021~2023)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1.3%)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건비	2,749	2,785	2,821	2,858	2,895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6급 최도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2,749	2,785	2,821	2,858	2,895	14,108	
지방교부세 등	2,749	2,785	2,821	2,858	2,895	14,108	
세 출	2,749	2,785	2,821	2,858	2,895	14,108	
인건비	2,749	2,785	2,821	2,858	2,895	14,108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